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60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이연희·이광희·허종식

박상혁 · 복기왕 · 홍기원

황 희 · 서미화 · 한민수

정준호 · 정성호 · 문진석

한준호 • 박홍배 • 이정문

김정호 • 김윤덕 • 박 정

문금주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및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제작자,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

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에 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 력,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 의 고지의무) ①・② (생 략) 의 고지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판 매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장 착된 구동축전지의 용량, 전격 전압 및 최고출력,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야 한다.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69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의 제공) ①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 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 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 보"라 한다)을 자동차소유자 등 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 설>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 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